

세 액 감 면 신 청 서				처리기간
				즉 시
신 청 인	①상호 또는 법인명		②사업자 등록번호	
	③대표자 성명		④주민등록번호	
	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	(☎)		
	⑥창업(입주개설)연월일		⑦농공단지등지정일자	
	⑧농공단지등공장소재지			
⑨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
신 청 내 용				
⑩과 세 연 도		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⑪사 업 명 및 종 목				
⑫감 면 대 상 사 업 (소 득)	?창업중소기업(?기술집약형, ?농어촌지역, □벤처기업) ?창업보육센터 ?중소제조업등 ?기술이전소득 ?농공단지등 입주기업 ?의료취약지역신설병원 ?농업회사법인 ?산림개발소득			
⑬감 면 대 상 세 액	원	⑭감면비율	%	
⑮감 면 받 고 자 하 는 세 액	?소득세	?법인세	원	
<16>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				
<17> 감 면 세 액				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	[?제6조제10항 ?제7조제4항 ?제11조제3항 ?제49조제2항 ?제50조제5항 ?제52조 ?제93조]	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		
세무서장 귀하	년 월 일	신청인	(서명 또는 인)	
※ 구비서류 1.농공단지입주기업의 경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서 사본1부 2.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0 제1호·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.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0 제2호·제3호·제10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당해사업이 동 각호의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1부 4.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5항의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확인하는 서류 사본 1부 ※구비서류는 최초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.				수 수 료 없 음

작 성 요 령

- 1.<16>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(1)호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(2)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.
- 2.⑭감면비율란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기입합니다.
- 3.<17>감면세액란에는 ⑮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<16>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.